

보도 일시	2022. 8. 28.(일) 12:00 2022. 8. 29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8. 28.(일) 12:00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	책임자	과 장 이지영 (044-202-7994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전 (044-202-7541) 주무관 이 환 (044-202-7974)

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

-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(94.4%)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과소 지급 등 총 2,252건 법 위반 확인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.

【 감독 개요 】

□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.

○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(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)에 이어 돌봄업종(요양보호, 아이돌봄, 장애인 돌봄 등)을 집중감독 했으며(340개소),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(158개소)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.

○ 특히, 「선(先) 자율개선 → 후(後) 현장점검」 방식*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.

* 돌봄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 전체, 취약업종은 감독 물량의 3배수 대상으로 감독 실시 1개월 전에 노동법 자가진단표,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배포

<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개요 >

- (기간) '22년 3월~6월 말
- (대상) 돌봄 업종 사업장 340개소 + 지역별 취약 업종* 158개소 등 총 498개소
- * 제조업, 소프트웨어개발업, 금융업, 사업지원서비스업 등

【 주요 감독 결과 】

□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(9.6%)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(주 52시간 초과)이 확인됐고,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.4시간으로 나타났다.

○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(2.4%),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.7시간,

○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(25.3%),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.8시간으로 확인됐다.

□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.8%(774명/5,240명)로, 이 중 5% 미만(18개소)이 37.5%*로 가장 많았으며 50%를 초과**하는 사례(6개소)도 12.5%로 나타났다.

* 위반 사업장(18개소)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위반 근로자 비율은 1.2%

** 위반 사업장(6개소)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위반 근로자 비율은 63.9%

<위반 사업장 전체 근로자 대비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현황(개소, 명)>

	전체	5%미만	5% 초과 ~20% 이하	20% 초과 ~50% 이하	50% 초과
위반 사업장 수	48 (100%)	18 (37.5%)	11 (22.9%)	13 (27.1%)	6 (12.5%)
전체 근로자수 대비 위반 근로자수(%)	14.8%	1.2%	11.8%	35.5%	63.9%

□ 주요 위반 사유는 ‘작업량 예측의 어려움,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’ 등으로 파악됐다.

○ 돌봄 업종은 ▲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,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▲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·예산처리·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이며,

○ 지역별 취약업종은 ▲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▲발주물량 폭증(예: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) ▲상시적인 구인난 ▲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도 있었다.

- 아울러,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하여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 (94.4%)에서 총 2,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으며,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,249건,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.
-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, 연장·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, 9,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여 지급지시했다.
 -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.5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 4천만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체불액의 62.1%를 차지하고,
 - 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.4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.3%를 차지했다.
- 또한,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,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·신고 위반 등을 적발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했다.
-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“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,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 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다만 “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1~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”이라고 하면서

< 일부 근로자 주 52시간 초과 사례 >

- A사업장(근로자수: 1,026명)은 교대제 근무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**근로자 1명**이 갑자기 대체근무를 하게 되어 **1주일간**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
- B사업장(근로자수: 169명)은 외부 감사 준비 및 신규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**근로자 2명이 각 1주일간**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

- “간헐적·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